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AB8BL)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068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9.19.(금)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4.(화)	25.10.15.(수) ~ 25.10.24.(금)	25.10.27.(월) ~ 25.10.30.(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4.(화)	25.10.15.(수)~ 25.10.24.(금)	25.10.27.(월)~ 25.10.3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 14140호(2025.09.18.)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8BL(당하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총 1,534세대**

[특별공급 741세대(기관추천 104세대, 다자녀가구 151세대, 신혼부부 243세대, 노부모부양 42세대, 생애최초 20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35	01	074.8900A	74A	74.8900	22.4593	97.3493	49.5311	146.8804	42.8771	149	14	15	34	4	28	95	54	3
	02	074.9779B	74B	74.9779	22.8789	97.8568	49.5892	147.4460	42.9274	71	7	7	16	2	13	45	26	2
	03	084.9714A	84A	84.9714	25.2578	110.2292	56.1987	166.4279	48.6491	579	57	57	133	17	110	374	205	7
	04	084.9964B	84B	84.9964	26.0964	111.0928	56.2154	167.3082	48.6634	261	26	26	60	7	50	169	92	11
	05	101.7961A	101A	101.7961	29.4147	131.2108	67.3263	198.5371	58.2818	275	-	27	-	8	-	35	240	8
	06	101.8671B	101B	101.8671	29.4641	131.3312	67.3734	198.7046	58.3224	66	-	6	-	1	-	7	59	1
	07	101.9837C	101C	101.9837	29.8851	131.8688	67.4506	199.3194	58.3892	125	-	13	-	3	-	16	109	5
	08	120.5868	120P	120.5868	38.7105	159.2973	79.7545	239.0518	69.0401	8	-	-	-	-	-	-	8	-
	합 계									**1,534**	**104**	**151**	**243**	**42**	**201**	**741**	**793**	**37**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의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74.8900A	074.9779B	084.9714A	084.9964B	101.7961A	101.8671B	101.9837C	120.5868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101A	101B	101C	120P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회(10%) 2026.03.20.	2회(10%) 2026.09.21.	3회(10%) 2027.03.19.	4회(10%) 2027.08.20.	5회(10%) 2027.12.20.	6회(10%) 2028.04.20.	입주지정일
74A	1606동(5호), 1612동(1호), 1614동(1호),1614동(2호), 1615동(1호),1617동(1호), 1617동(2호)	3	1F	224,475,900	296,624,100	-	521,100,000	26,055,000	26,055,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156,330,000
		7	2F	225,682,100	298,217,900	-	523,900,000	26,195,000	26,195,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52,390,000	157,170,000
		7	3F	226,845,200	299,754,800	-	526,600,000	26,330,000	26,33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157,980,000
		7	4F	228,008,300	301,291,700	-	529,300,000	26,465,000	26,465,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158,790,000
		7	5F	229,214,400	302,885,600	-	532,100,000	26,605,000	26,605,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159,630,000
		118	기준층	236,279,100	312,220,900	-	548,500,000	27,425,000	27,425,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164,550,000
74B	1606동(4호), 1612동(2호), 1615동(2호)	2	1F	220,297,400	291,102,600	-	511,400,000	25,570,000	25,57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153,420,000
		3	2F	221,460,500	292,639,500	-	514,100,000	25,705,000	25,705,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154,230,000
		3	3F	222,623,600	294,176,400	-	516,800,000	25,840,000	25,84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155,040,000
		3	4F	223,786,700	295,713,300	-	519,500,000	25,975,000	25,975,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155,850,000
		3	5F	224,949,800	297,250,200	-	522,200,000	26,110,000	26,11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57	기준층	231,885,200	306,414,800	-	538,300,000	26,915,000	26,915,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161,490,000
84A	1602동(3,4호), 1603동(3,4호), 1605동(2,3,4호),1606동(2,3호), 1607동(3,4호),1608동(3,4호), 1609동(3,4호),1610동(3,4호), 1611동(3,4호),1612동(3,4호), 1613동(2,3,4호),1615동(3,4호), 1616동(3,4호)	7	1F	252,174,600	333,225,400	-	585,400,000	29,270,000	29,27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58,540,000	175,620,000
		28	2F	253,510,000	334,990,000	-	588,500,000	29,425,000	29,425,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58,850,000	176,550,000
		28	3F	254,845,400	336,754,600	-	591,600,000	29,580,000	29,580,000	59,160,000	59,160,000	59,160,000	59,160,000	59,160,000	59,160,000	177,480,000
		28	4F	256,180,800	338,519,200	-	594,700,000	29,735,000	29,735,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59,470,000	178,410,000
		28	5F	257,516,200	340,283,800	-	597,800,000	29,890,000	29,89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59,780,000	179,340,000
		460	기준층	265,442,400	350,757,600	-	616,200,000	30,810,000	30,81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184,860,000
84B	1602동(5호), 1603동(5호), 1605동(1호),1606동(1호), 1607동(5호),1608동(5호), 1609동(5호),1610동(5호), 1611동(5호),1612동(5호), 1613동(1호),1615동(5호), 1616동(5호)	11	1F	245,411,500	324,288,500	-	569,700,000	28,485,000	28,485,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170,910,000
		13	2F	246,703,800	325,996,200	-	572,700,000	28,635,000	28,635,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171,810,000
		13	3F	247,996,100	327,703,900	-	575,700,000	28,785,000	28,785,000	57,570,000	57,570,000	57,570,000	57,570,000	57,570,000	57,570,000	172,710,000
		13	4F	249,288,500	329,411,500	-	578,700,000	28,935,000	28,935,000	57,870,000	57,870,000	57,870,000	57,870,000	57,870,000	57,870,000	173,610,000
		13	5F	250,580,800	331,119,200	-	581,700,000	29,085,000	29,085,000	58,170,000	58,170,000	58,170,000	58,170,000	58,170,000	58,170,000	174,510,000
		198	기준층	258,291,600	341,308,400	-	599,600,000	29,980,000	29,980,000	59,960,000	59,960,000	59,960,000	59,960,000	59,960,000	59,960,000	179,880,000
101A	1601동(1,2호), 1602동(1호), 1603동(1호),1604동(1,2호) 1607동(1호),1608동(1호), 1609동(1호),1610동(1호), 1611동(1호),1616동(1호),	8	1F	270,832,330	357,879,700	35,787,970	664,500,000	33,225,000	33,225,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199,350,000
		12	2F	272,258,830	359,764,700	35,976,470	668,000,000	33,400,000	33,4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12	3F	273,685,330	361,649,700	36,164,970	671,500,000	33,575,000	33,575,000	67,150,000	67,150,000	67,150,000	67,150,000	67,150,000	67,150,000	201,450,000
		12	4F	275,111,830	363,534,700	36,353,470	675,000,000	33,750,000	33,75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12	5F	276,538,330	365,419,700	36,541,970	678,500,000	33,925,000	33,925,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67,850,000	203,550,000
		219	기준층	285,056,620	376,675,800	37,667,580	699,400,000	34,970,000	34,97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209,820,000
101B	1602동(2호), 1603동(2호), 1616동(2호)	1	1F	270,791,510	357,825,900	35,782,590	664,400,000	33,220,000	33,22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66,440,000	199,320,000
		3	2F	272,218,010	359,710,900	35,971,090	667,900,000	33,395,000	33,395,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66,790,000	200,370,000
		3	3F	273,644,510	361,595,900	36,159,590	671,400,000	33,570,000	33,57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67,140,000	201,420,000
		3	4F	275,071,010	363,480,900	36,348,090	674,900,000	33,745,000	33,745,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202,470,000
		3	5F	276,497,510	365,365,900	36,536,590	678,400,000	33,920,000	33,920,000	67,840,000	67,840,000	67,840,000	67,840,000	67,840,000	67,840,000	203,520,000
		53	기준층	285,056,620	376,675,800	37,667,580	699,400,000	34,970,000	34,97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69,940,000	209,820,000

101C	1607동(2호), 1608동(2호), 1609동(2호),1610동(2호), 1611동(2호)	5	1F	264,474,200	349,478,000	34,947,800	648,900,000	32,445,000	32,445,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194,670,000
		5	2F	265,859,880	351,309,200	35,130,920	652,300,000	32,615,000	32,615,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195,690,000
		5	3F	267,245,670	353,140,300	35,314,030	655,700,000	32,785,000	32,785,000	65,570,000	65,570,000	65,570,000	65,570,000	65,570,000	65,570,000	196,710,000
		5	4F	268,672,170	355,025,300	35,502,530	659,200,000	32,960,000	32,96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65,920,000	197,760,000
		5	5F	270,057,960	356,856,400	35,685,640	662,600,000	33,130,000	33,13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198,780,000
		100	기준층	278,413,190	367,897,100	36,789,710	683,100,000	34,155,000	34,155,000	68,310,000	68,310,000	68,310,000	68,310,000	68,310,000	68,310,000	204,930,000
120P	1602동(5호), 1603동(5호), 1616동(5호)	8	25F	466,019,000	615,800,900	61,580,100	1,143,400,000	57,170,000	57,17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114,340,000	343,020,000
	1608동(5호)		24F	466,019,000	615,800,900	61,580,100										
	1607동(5호)		23F	466,019,000	615,800,900	61,580,100										
	1609동(5호), 1610동(5호)		22F	466,019,000	615,800,900	61,580,100										
	1613동(1호)		21F	466,019,000	615,800,900	61,580,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제작물 등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상이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지하층 계단,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우수저수조관리, 소화가스실, 기계/열교환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84A, 101A, 101C 타입의 주택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

구 분(약식표기)		74A	74B	84A	84B	101A	101B	101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6	2	-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5	2	-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6	2	-	-	-	**11**
	중소기업 근로자	2	1	7	4	-	-	-	**14**
	북한이탈주민	1	-	5	2	-	-	-	**8**
	우수선수	1	1	5	2	-	-	-	**9**
	철거주택 (제36조제1항, 통장미사용)	1	-	5	2	-	-	-	**8**
	장애인	4	2	18	10	-	-	-	**3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지역(50%)	8	4	29	13	14	3	7	**78**
	기타지역(50%)	7	3	28	13	13	3	6	**73**
신혼부부 특별공급		34	16	133	60	-	-	-	**24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2	17	7	8	1	3	**42**
생애최초 특별공급		28	13	110	50	-	-	-	**201**
합 계		**67**	**32**	**264**	**119**	**35**	**7**	**16**	**74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able>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철거주택(청약통장 불필요)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하는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20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table>
<tr><td></td><td>■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함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예비입주자 포함)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10.14.(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10.15.(수)~2025.10.24.(금) (10:00~17:00) • 장소 :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자격검증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 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서류 제출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일시 : 2025.10.27.(월) ~ 2025.10.30.(목)(10:00~17:00)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견본주택 방문(10:00 ~ 17:00)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 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14.(화) ~ 2025.10.23.(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0.1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5.10.15.(수) ~ 25.10.24.(금) 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방식 등 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 서류접수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류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com)** 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확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복무기간25년이상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 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 재혼배우자의 전 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국내 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 하는 경우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 코드번호,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시 "신고 사실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 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주민)등록 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제출서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성명 등 전부 표기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 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소득세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인증 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 각서 제출시"신고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 사명, 의료기관등록 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 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주택 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 제출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계약 위임용.(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신청불가) ※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의 공증) 제출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및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단,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전 서류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이상)명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국내 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산정기준표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직계 존속을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 여부(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당첨 사실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신청자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 기간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발급 * (청약홈)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가입은행) 창구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계약 위임용.(본인서명사실 확인으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의 공증) 제출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당첨자격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④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세무서/등기소 ③,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주택,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추가 해당자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당첨자는 계약전에 당첨자격 서류검수를 완료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5.10.27.(월) ~ 25.10.30.(금), 4일간 (10:00~17:00)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1688-0680**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s://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com)**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 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증서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납부 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해당 세대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추가선택품목계약 (발코니확장공사및유상옵션포함)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86251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601동 1201호 계약자 → '16011201홍길동')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예외)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당첨자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또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서울시 노원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자격확인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월의 대납종료일까지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법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또는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내에는 열쇠인수일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대금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7,326,000	730,000	6,596,000
74B	6,834,000	680,000	6,154,000
84A	5,966,000	590,000	5,376,000
84B	7,240,000	720,000	6,520,000
101A	5,086,000	500,000	4,586,000
101B	6,088,000	600,000	5,488,000
101C	6,344,000	630,000	5,714,000
120P	5,326,000	530,000	4,796,000

2.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862529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대금에 대한 계약금, 잔금은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각 세대별 상이)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수납계좌와 다름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건축법 시행령」,「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적법하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고, 거실, 침실 등의 외부창호, 출입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확장형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 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시공되는 제품의 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 외부 창호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기에 접하는 창호(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등) 및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등에는 실내외 온도차 및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및 단차 발생,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고,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비확장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정 등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 배관 등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 등의 전기 마감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평면 선택형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패밀리 라운지형	거실과 알파룸 통합 (거실 우물천장 확대, 거실 수납장 포함)	101A	100,000	780,000	880,000
		101B	100,000	770,000	870,000
[B] 수납 강화형	침실2 및 침실3의 개별 드레스룸 구성 (드레스룸 가구도어 및 포스트형 시스템선반 포함)	84B	200,000	1,540,000	1,740,000
		101C	200,000	1,550,000	1,750,000
[C] 와이드 침실형	침실3과 알파룸 통합 (침실3 기둥 측면 붙박이장 포함)	84B	100,000	820,000	920,000
	침실3과 알파룸 통합 (침실3 붙박이장 포함, 침실3 및 건식욕실 간 슬라이딩 목도어 포함)	101C	350,000	3,120,000	3,470,000

※ 수납 강화형 및 와이드 침실형 선택시, 침실2 또는 침실3 개별 붙박이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101C타입 와이드 침실형 선택시, 복도에서 침실3으로 출입하는 도어의 형태가 슬라이딩도어로 변경되오니, 견본주택에 전시된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선택형에 따라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납강화형 선택시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이 불가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선택형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유상옵션 에어컨의 용량 또는 위치, 커튼박스 길이 등이 변경되오니,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관 자동 중문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현관 자동 중문	1.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 (리니어 모터형) 2. 시트 판넬 (중문 좌우 벽체)	74A	200,000	1,820,000	2,020,000
		74B	200,000	1,820,000	2,020,000
		84A	200,000	1,940,000	2,140,000
		84B	250,000	2,110,000	2,360,000
		101A	250,000	2,110,000	2,360,000
		101B	200,000	1,940,000	2,140,000
		101C	200,000	1,990,000	2,190,000

※ 현관 중문의 하부 레일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되며, 바닥 마감재보다 돌출됩니다.
※ 현관 중문 유리는 강화유리(5T)에는 비산방지필름이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시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미선택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현관 중문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3) 바닥재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원목마루	거실/주방/복도/침실/드레스룸 바닥 원목마루 업그레이드 [원목마루 : 이건마루 14T 원목마루 뉴큐뮬러스]	74A	650,000	5,880,000	6,530,000
		74B	650,000	5,750,000	6,400,000
		84A	800,000	7,260,000	8,060,000
		84B	800,000	7,170,000	7,970,000
		101A	900,000	8,050,000	8,950,000
		101B	900,000	8,160,000	9,060,000
		101C	900,000	8,250,000	9,150,000
		120P	1,150,000	10,260,000	11,410,000

※ 옵션 미선택시, 동일 업체의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84A타입은 기본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으며, 101A 및 101C타입에는 원목마루 유상옵션 제품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파룸, 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가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바닥재가 시공됩니다. (현관 창고 제외)
※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으며, 강마루보다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4)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디아망 벽지	거실/주방/복도/침실 디아망 벽지 업그레이드 [벽지 : LX하우시스 PR002-13 블랑그레이]	74A, 74B	50,000	280,000	330,000
		74A, 74B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선택시	50,000	240,000	290,000
		84A	50,000	310,000	360,000
		84A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선택시	50,000	240,000	290,000
		84B	50,000	300,000	350,000
		84B *[1-C] 와이드 침실형 선택시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선택시	50,000	260,000	310,000
		101A, 101B	50,000	490,000	540,000
		101A, 101B *[1-A] 패밀리 라운지형 선택시 *[1-C] 와이드 침실형 선택시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선택시	50,000	470,000	520,000
		101C	50,000	520,000	570,000
		101C *[1-C] 와이드 침실형 선택시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선택시	50,000	470,000	520,000
[B] 시트 판넬	거실 소파 뒷벽 및 복도 아트월 벽 시트 판넬 [시트지 : 케데코 KDC1170-6]	74A, 74B	250,000	2,030,000	2,280,000
		84A	250,000	2,130,000	2,380,000
		84B	250,000	4,100,000	4,350,000
		84B *[11] 시그니처 바스 선택시	450,000	3,670,000	4,120,000
		101A	350,000	3,170,000	3,520,000
		101A *[1-A] 패밀리 라운지형 선택시	200,000	1,950,000	2,150,000
		101B	350,000	2,980,000	3,330,000
		101B *[1-A] 패밀리 라운지형 선택시	200,000	1,750,000	1,950,000
		101C	400,000	3,340,000	3,740,000

※ 옵션 미선택시, 기본으로 지정된 실크벽지가 시공되며, 견본주택 및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항 디아망 벽지 옵션과 B항 시트 판넬 옵션은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선택 불가)
※ 알파룸이 있는 타입의 경우 A항 디아망 벽지 유상옵션 선택시, 디아망 벽지로 시공됩니다.
※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은 기본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선택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시트 판넬 옵션 선택시, 판넬 마감 범위는 타입 및 선택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복도 일부 벽체 시트판넬이 시공되며, 그 외 거실/주방/일부 복도/침실 등은 디아망 벽지로 기본 시공됩니다.

(5) 주방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그니처 키친	1. 이탈리아 MARAZZI 세라믹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라인조명(작업대 상부) 4. 무광 씽크수전 5. 절수페달	74A	950,000	8,400,000	9,350,000
		74B	1,000,000	8,730,000	9,730,000
	1. 이탈리아 MARAZZI 세라믹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라인조명(작업대 상부) 4. 무광 씽크수전 5. 절수페달 6. 장식장 7. 주방 팬트리 (가구도어, 시스템 선반, 2구 멀티조명)	84A	1,250,000	11,250,000	12,500,000
	1. 이탈리아 MARAZZI 세라믹 벽체 및 상판 2.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3. 라인조명(작업대 상부) 4. 무광 씽크수전 5. 절수페달 6. 양면수납 아일랜드 하부장(세라믹 상판)	84B	800,000	6,970,000	7,770,000
		101A	1,150,000	10,160,000	11,310,000
		101B	1,200,000	10,630,000	11,830,000
		101C	1,000,000	8,740,000	9,740,000

※ 101A타입은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시, 거실 아트월 타일이 아일랜드 측면 벽체까지 연장되어 시공되며,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수납장, 후드 외의 기타 빌트인 가전제품은 별도 추가 선택품목입니다.
※ 옵션 미선택시(확장형 기본 주방인 경우), 5항의 주방 인테리어 추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시그니처 키친 옵션으로 기본 시공됩니다.

(6) 주방 인테리어 추가 옵션 (시그니처 키친 미선택세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주방 상판 업그레이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업그레이드 [LX하우시스 FL311 로데스스완]	74A	100,000	1,050,000	1,150,000
		74B	100,000	1,090,000	1,190,000
		84A	100,000	980,000	1,080,000
		84B	150,000	1,230,000	1,380,000
		101A	250,000	2,300,000	2,550,000
		101B	250,000	2,080,000	2,330,000
		101C	200,000	1,650,000	1,850,000
[B] 주방 양면수납 아일랜드 하부장	[B-1] 양면수납 아일랜드 하부장 (5-A항 옵션 미선택 세대 /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84B	150,000	1,090,000	1,240,000
		101A	200,000	1,710,000	1,910,000
		101B	200,000	1,710,000	1,910,000
		101C	150,000	1,140,000	1,290,000
	[B-2] 양면수납 아일랜드 하부장 (5-A항 옵션 선택 세대 / 주방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84B	150,000	1,380,000	1,530,000
		101A	250,000	1,970,000	2,220,000
		101B	250,000	1,970,000	2,220,000
		101C	150,000	1,450,000	1,600,000

※ 인조대리석와 엔지니어드스톤은 모두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면 수납 아일랜드 하부장은 메인 주방과 동일한 상판 옵션으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항 유상옵션 미선택시, B-1항만 선택 가능 / A항에서 유상옵션 선택시, B-2항만 선택가능)
※ 아일랜드 하부장 추가 옵션 선택시, 하부장의 측면에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84B, 101A, 101B, 101C타입의 경우, B항 아일랜드 하부장 추가 옵션 선택하신 세대에 한하여,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본공사시 마감재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시그니처 키친 옵션으로 기본 시공됩니다.

(7) 주방 냉장고장 및 키친핏 냉장고 세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주방 냉장고장	주방 냉장고장 (상부장+여닫이장)	74A	300,000	2,610,000	2,910,000
		74B	300,000	2,410,000	2,710,000
		84A	250,000	2,250,000	2,500,000
		84B	300,000	2,610,000	2,910,000
		101A	300,000	2,610,000	2,910,000
		101B	300,000	2,610,000	2,910,000
		101C	300,000	2,410,000	2,710,000
[B] 키친핏 냉장고 세트 (A항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	[B-1] 비스포크 냉동전용고 + 냉장전용고 + 김치전용고 세트 (삼성전자 / 칼라 : 코타화이트)	전타입	550,000	4,780,000	5,330,000
	[B-2] 비스포크 냉동전용고 + 냉장전용고 + 김치전용고 세트 (삼성전자 / 칼라 : 에센셜화이트)	전타입	550,000	4,780,000	5,330,000

※ 키친핏 냉장고는 세미 빌트인 제품으로, 가구와 제품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 냉장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계산방식 변경 등 법률 개정 및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본공사시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어서비스는 연동링크를 통해 홈IoT 전용 가전기기 제조사의 홈IoT 앱에 연결되어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A항 주방 냉장고장이 기본 설치됩니다. (냉장고 세트 제외)

(8) 주방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인덕션 업그레이드	[A-1] 인덕션 3구(삼성NZ63DG403EFK_블랙)	전타입	100,000	770,000	870,000
	[A-2] 인덕션 3구(삼성_NZ63DB607CFH_화이트)	전타입	150,000	1,120,000	1,270,000
[B] 빌트인 전기오븐 (아일랜드 하부장이 있는 경우만 가능)	[B-1] 빌트인 전기오븐(삼성_NQ36A6555CK_블랙)	전타입	50,000	360,000	410,000
	[B-2] 빌트인 전기오븐(삼성_NQ36A6588CW_화이트)	전타입	50,000	480,000	530,000
[C] 빌트인 식기세척기	[C-1]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_DW80F71Y1SEW_12인용)	전타입	100,000	950,000	1,050,000
	[C-2]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_DW80F73Y1FEW_14인용)	전타입	150,000	1,280,000	1,430,000
[D] 빌트인 정수기	[D-1] 빌트인 정수기(코웨이_CHP-1111N)	전타입	100,000	1,090,000	1,190,000
	[D-2] 빌트인 정수기(LG_WU923AS)	전타입	150,000	1,170,000	1,320,000
[E] 주방 스마트 TV	13인치 주방 스마트 TV(동영엠텍_DM-N330)	전타입	50,000	650,000	700,000

※ 빌트인 전기오븐의 경우, 84B, 101A, 101B, 101C타입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4항에서 시그니처 키친 옵션을 추가 선택계약하신 세대
2) 6-A 또는 6-B항에서 아일랜드 하부장을 추가 선택계약하신 세대
※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센트리C-HOME'에서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 브랜드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의 경우 본공사 투입 시점에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 유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주방 창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주방 시스템 창호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150cm)	74A	50,000	390,000	44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90cm)	74B	50,000	310,000	36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150cm)	84A	50,000	390,000	44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150cm)	84B	50,000	390,000	44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200cm)	101A	50,000	530,000	58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150cm)	101B	50,000	390,000	440,000
	KCC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200cm)	101C	50,000	530,000	580,000

※ 발코니 확장형 기본 주방 창호는 KCC PL 이중창이며, 철재난간이 시공됩니다.
※ 주방 시스템 창호 옵션 선택시, 철재난간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창호 선택시, 여닫이 환기창은 평면 대칭 여부에 관계없이 우측에 설치되며, 모두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주방 시스템 창호가 기본 시공됩니다.

(10) 뷰틸리티 다용도실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뷰틸리티 다용도실 특화	1. 다용도실 수납장(상하부장 및 오픈수납장) 2. 세탁기 수납장 3. 슬라이딩 목도어	101A	500,000	4,630,000	5,130,000
		101B	400,000	3,620,000	4,020,000

※ 101A, 101B, 120P타입은 옵션과 관계없이, 평면 구조상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상하)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뷰틸리티 다용도실 특화 가구가 기본 시공됩니다.

(11) 시그니처 바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그니처 바스	1. 이탈리아 MARAZZI 벽체 타일 2. 엔지니어드스톤 욕실 선반 3.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4.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아메리칸 스탠다드) 5. 무광천장재 6. 간접조명(천장/욕실장) 7. 복합 환풍기	74A, 74B	1,100,000	9,660,000	10,760,000
	1. 이탈리아 MARAZZI 벽체 타일 2. 엔지니어드스톤 건식욕실 세면대 상판 3.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 4.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아메리칸 스탠다드) 5. 무광천장재 6. 간접조명(천장/거울/욕실장) 7. 복합 환풍기 8. 복도 및 건식욕실 간 슬라이딩 목도어	84A	1,500,000	13,370,000	14,870,000
		84B	1,450,000	13,140,000	14,590,000
		101A	1,850,000	16,770,000	18,620,000
		101B	1,550,000	13,740,000	15,290,000
		101C	1,650,000	14,740,000	16,390,000

※ 타입에 따라 욕실장 디자인이 다른 부분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타입 : 욕실장은 은경도어 슬라이딩 욕실장 / 84, 101타입 : PS도어 여닫이 욕실장 및 세면대 거울)
※ 옵션 미선택시, 욕조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수납형 에이런으로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시, 욕실 거울은 일반 실버 프레임으로 시공되며, 거울과 욕실장 모두 간접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B타입의 경우 시그니처 바스 옵션 선택시, 건식욕실의 공간이 확대되오니, VR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그니처 바스 옵션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그니처 바스 선택시, 스위치와 회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시그니처 바스 옵션의 마감재로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12) 수납 추가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시스템 선반 추가	현관창고 / 복도 팬트리 시스템선반	74A	50,000	570,000	620,000
	현관창고 / 복도 팬트리 시스템선반	74B	50,000	570,000	620,000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84A	50,000	200,000	250,000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84B	50,000	330,000	380,000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101A	50,000	300,000	350,000
	현관창고 / 복도 팬트리 시스템선반	101B	50,000	520,000	570,000
	현관창고 / 복도 팬트리 시스템선반	101C	50,000	530,000	580,000
[B] 침실2 붙박이장 추가	여닫이장 (침실 폭 2.7m)	74A, 74B, 84A, 84B, 120P	100,000	1,020,000	1,120,000
	여닫이장 (침실 폭 3.0m)	101A, 101B, 101C	150,000	1,210,000	1,360,000
[C] 침실3 붙박이장 추가	여닫이장 (침실 폭 2.7m)	74A, 74B, 120P	100,000	1,020,000	1,120,000
	여닫이장 (침실 폭 3.0m)	84A, 84B, 101A, 101B, 101C	150,000	1,210,000	1,360,000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시스템 선반이 기본 시공됩니다.
※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는 바닥, 벽체,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13항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시, 침실2 붙박이장 추가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84B, 101C타입은 1-A항 및 1-B항 평면선택형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 추가 옵션 선택 불가합니다.
※ 평면 선택형에 따라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패밀리 라이브러리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패밀리 라이브러리	침실2 패밀리 라이브러리 인테리어 1. 반투명 유리 슬라이딩 알루미늄 도어 2. 벽체 2면 우드디자인 판넬 3. 라이브러리 가구 4. 천장 우드디자인 판넬 5. 마그네틱 트랙 조명 6. 커튼박스 간접조명)	74A	900,000	7,860,000	8,760,000
		74B	850,000	7,840,000	8,690,000
		84A	900,000	8,050,000	8,950,000
		84B	900,000	7,950,000	8,850,000
		101A	1,050,000	9,160,000	10,210,000
		101B	1,000,000	9,170,000	10,170,000
		101C	1,050,000	9,650,000	10,700,000
	침실3 패밀리 라이브러리 인테리어 1. 반투명 유리 슬라이딩 알루미늄 도어 2. 벽체 2면 우드디자인 판넬 3. 라이브러리 가구 4. 천장 우드디자인 판넬 5. 마그네틱 트랙 조명 6. 커튼박스 간접조명	120P	950,000	8,570,000	9,520,000

※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시, 침실2 붙박이장 추가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20P타입의 경우, 침실3에 해당)
※ 마그네틱 트랙조명은 디밍/색온도 조정이 불가한 제품입니다.
※ 평면 선택형에 따라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A] 시그니처 스타일룸	1. 파우더 특화 - 화장대 - 측면 벽체 - 파우더 상부 조명 2. 드레스룸 특화 -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74A	500,000	4,330,000	4,830,000
		74B	500,000	4,330,000	4,830,000
		84A	600,000	5,200,000	5,800,000
		84B	550,000	4,830,000	5,380,000
		101A	500,000	4,620,000	5,120,000
		101B	550,000	4,870,000	5,420,000
		101C	500,000	4,610,000	5,110,000
[B] 시그니처 마스터룸	1. 마스터룸 장식장 - 유리선반 - 양방향 서랍 2. 붙박이장 3. 트윈 파우더룸 특화 - 화장대 - 파우더 조명형 거울 4. 드레스룸 특화 - 드레스룸 벽체 및 시트 판넬 - 슬라이딩 목도어 -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101C	1,150,000	10,280,000	11,430,000

※ 101C타입의 시그니처 마스터룸 옵션은 침실1의 공간 구성이 변경되는 특화 옵션으로, 추가선택품목 계약 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C타입의 경우, A항과 B항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시그니처 스타일룸으로 기본 시공됩니다.

(15)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및 선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 침실 직간접 직부등/커튼박스 간접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74A	기본	600,000	5,510,000	6,11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750,000	6,510,000	7,260,000
		74B	기본	600,000	5,510,000	6,11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750,000	6,530,000	7,280,000
		84A	기본	700,000	6,180,000	6,880,000
			[5] 시그니처키친 선택세대	800,000	7,190,000	7,99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850,000	6,440,000	7,290,000
			[5] 시그니처키친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800,000	7,400,000	8,200,000
		84B	기본	800,000	7,070,000	7,870,000
			[1-B] 수납강화형 선택세대	900,000	7,120,000	8,020,000
			[1-C] 와이드침실형 선택세대	800,000	7,120,000	7,92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750,000	6,810,000	7,560,000
			[1-B] 수납강화형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900,000	8,190,000	9,090,000
			[1-C] 와이드침실형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900,000	7,820,000	8,720,000
		101C	기본	850,000	7,610,000	8,460,000
			[1-B,1-C] 수납강화형/와이드침실형 선택세대	850,000	7,480,000	8,33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850,000	8,720,000	9,570,000
			[14-B] 시그니처 마스터룸 선택세대	950,000	7,610,000	8,560,000
			[1-B, 1-C] 수납강화형/와이드침실형 + [14-B] 시그니처마스터룸 선택세대	850,000	7,370,000	8,220,000
			[1-C] 와이드침실형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950,000	8,510,000	9,460,000
			[1-C] 와이드침실형 + [14-B] 시그니처마스터룸 선택세대	950,000	8,720,000	9,670,000
			[1-C] 와이드침실형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 [14-B] 시그니처마스터룸 선택세대	950,000	8,480,000	9,430,000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및 선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다이닝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 침실 직간접 직부등/커튼박스 간접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101A, 101B	기본	950,000	8,530,000	9,480,000
			[1-A] 패밀리 라운지형 선택세대	1,000,000	8,860,000	9,860,000
			와이드침실형 선택세대	950,000	8,460,000	9,410,000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1,050,000	9,650,000	10,700,000
			[1-A] 패밀리 라운지형 + [13] 패밀리라이브러리 선택세대	1,100,000	9,980,000	11,080,000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네트워크 스위치가 고급형으로 변경되며, 네트워크 스위치의 회로수, 크기, 재질, UI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SMPS함(안정기)이 신발장 최상단에 설치되며, 해당 부분의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 평면 타입 및 평면 선택형에 따라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20P타입 발코니 확장형은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이 기본으로 시공됩니다. (패밀리 라이브러리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제공)

(16)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2대 (거실, 침실1)	74A, 74B	300,000	2,600,000	2,900,000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	5,220,000	5,820,000
	3대 (거실, 주방, 침실1)	84A	400,000	3,760,000	4,16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시그니처키친 옵션 선택시**		700,000	6,220,000	6,920,000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50,000	7,530,000	8,380,000
	3대 (거실, 주방, 침실1)	84B	400,000	3,760,000	4,16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1-B]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700,000	6,220,000	6,92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1-C] 와이드침실형 옵션 선택 시**		750,000	6,620,000	7,370,000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50,000	7,530,000	8,380,000
	3대 (거실, 주방, 침실1)	101A, 101B	450,000	4,250,000	4,700,000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3대 (거실, 주방, 침실1) ***[1-A] 패밀리 라운지형 옵션 선택 시**		500,000	4,220,000	4,72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1-A] 패밀리 라운지형 옵션 선택 시**		750,000	6,570,000	7,32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와이드침실형 평면 선택 시**		750,000	6,590,000	7,340,000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50,000	7,600,000	8,450,000
	3대 (거실, 주방, 침실1)	101C	450,000	4,190,000	4,64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1-B]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750,000	6,490,000	7,240,000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1-C] 와이드침실형 옵션 선택 시**		750,000	6,510,000	7,260,000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50,000	7,540,000	8,390,000
	3대 (거실, 주방, 침실1)	120P	500,000	4,280,000	4,780,000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50,000	7,790,000	8,6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의 일반형으로 설치되어 난방, 공기청정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미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옵션 공급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84A 타입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시, 알파룸이 팬트리로 변경되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B, 101C타입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알파룸이 드레스룸으로 변경되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B, 101A, 101B, 101C타입은 알파룸이 통합되는 옵션(와이드 침실형-84B,101A,101B,101C, 패밀리 라운지형-101A,101B) 선택시, 변경되는 평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모델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공되는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냉방 부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는 구간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실내기의 크기와 수에 맞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17)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및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74A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400,000	3,430,000	3,83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74B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400,000	3,510,000	3,91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84A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5] 시그니처키친 옵션 선택시**		400,000	3,540,000	3,94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 알파룸)]		400,000	3,740,000	4,14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84B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B]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400,000	3,700,000	4,10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C] 와이드침실형 옵션 선택 시**		400,000	3,540,000	3,94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 알파룸)]		400,000	3,740,000	4,14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101A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A] 패밀리 라운지형 옵션 / 와이드침실형 평면 선택 시**		400,000	3,760,000	4,16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 알파룸)]		450,000	3,920,000	4,37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101B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A] 패밀리 라운지형 옵션 / 와이드침실형 평면 선택 시**		450,000	3,790,000	4,24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450,000	4,000,000	4,450,000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 알파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101C	150,000	1,220,000	1,37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B]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450,000	3,940,000	4,39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4실 제어(거실, 침실1,2,3)] ***[1-C] 와이드침실형 옵션 선택 시**		450,000	3,790,000	4,24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 알파룸)]		450,000	4,000,000	4,450,000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AI]	120P	150,000	1,310,000	1,460,000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LG 프리미엄 환기AI + 5실 제어(거실, 침실1,2,3,4)]		550,000	4,670,000	5,220,000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LG전자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장비는 설치되지 않으며(장비 업그레이드), 상기 옵션 금액은 기본 장비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되며, 이로 인해 장비가 설치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더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제품은 규격 변경이나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환기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시 환기시스템 및 유선리모컨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프리미엄 청정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전열교환기가 LG 프리미엄 환기AI로 변경됩니다. 또한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전열교환기가 LG 프리미엄 환기AI로 변경되며, 각 실에 적용되는 기본 디퓨져가 스마트 디퓨져로 변경됩니다. 장비 및 디퓨져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유상옵션 선택 시 실별 배기 스마트디퓨져 1개소에 공기질센서(CO_2, 미세먼지)가 내장되어 각실의 공기청정도를 LED로 표시하며 설정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스마트디퓨져 작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은 84A, 84B, 101A, 101B, 101C 타입의 알파룸이 변경 또는 통합되는 옵션(시그니처 키친-84A, 와이드 침실형-84B,101A,101B,101C, 패밀리 라운지형-101A,101B, 수납강화형-84B,101C)에 따라 스마트 디퓨져의 수량 차이로 금액이 다르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프리미엄 청정시스템(각실제어) 유상옵션 선택 시 부속실(드레스룸, 팬트리등)에 설치된 스마트 디퓨져 제어는 해당 부속실에서 가까운 실과 연동하여 작동됩니다.
※ 부속실(드레스룸, 팬트리등)에 설치되는 스마트 디퓨져는 타입별로 설치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장비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C-HOME'에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부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862535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시 기본 가전제품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유무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류,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및 가구장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11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임.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주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2)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3)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천장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4)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팬트리문(해당 타입), 화장대(상판인조석 포함), 복도장/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 일체	미설치
5) 주방	주방/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 일체(상판, 씽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절수페달, 주방TV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6)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벽/바닥 타일, 천장재, 인조석,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7) 창호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플라스틱창호 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루버
8)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9) 옵션품목	선택하는 옴션품목 일체 포함	미설치
10)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미설치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101A	101B	101C	120P
마이너스 옵션금액	31,254,000	31,434,000	36,316,000	36,203,000	43,101,000	43,119,000	43,293,000	51,888,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조경석 및 방음벽 등의 종류, 색상, 디자인,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및 옥외주차장 상부 보행 가로 데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인접 건물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기존 전신주 및 맨홀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레벨,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계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경계석, 계단, 마운딩(구릉)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 LH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패키지 공모 사업으로 공모안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완료 사항,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제시한 상품 사항,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제출 공모안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74A, 74B, 84B, 101B, 120P타입은 견본주택 건립세대 중 84A, 101A, 101C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 계획 및 외관, 조경,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카페(크리스탈라운지) 내부에 버스도착 정보 게시판이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실 시공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버스도착 정보 게시판과 실제 버스도착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학교 설립 및 지정 주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모든 학교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 개발사업 진행 상황, 분양률 입주상황,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내 계획 중인 초등학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시기 및 개교여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 초등학교의 개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하고 통학대책 등을 교육청과 협의(임시 배치학교의 통학대책 및 교육시설 확충 비용은 사업주체 부담)하여 마련할 예정이고, 임시학교 배치 시 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 사항 안내
  - (초등학생) 당 사업지는 인근의 발산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인천시교육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함.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인천시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여건

□ 공통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영구음영 포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공간 명칭, 단지 주·부출입구, 주동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시에는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 및 주차장 상부 보행데크(1층 외부공간)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 주변에는 콘크리트 옹벽, 전석, 조경석, 생울타리, 휀스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구조특성상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BI 및 CI,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시 검토로 인하여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및 CCTV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또는 입주자가 점용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승강기와 현관문이 서로 마주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평면 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 부서공간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동주변으로 우수 도피관이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세대 벽체와 승강로가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입주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에 천주교 인천교구묘원이 위치해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묘원이 보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남측과 서측에는 도시지원시설이 건립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신설되는 시설 및 건물에 의해 조망이 간섭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캐노피, 입면 장식, 옥상 구조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피해 및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부 출입 통과동선 및 보행로 등에 자전거보관소, 킥보드주차존 설치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며, 이를 단지모형 및 CG 등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602, 1603, 1604, 1608, 1610, 1611, 1612, 1616동 인접부에 D/A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616동 북측에는 전기, 발전기실 DA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매연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문주 구조물로 인하여 1617동 2호 세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인입을 위해 단지 내 전기시설물(전주 또는 패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1동 지상1층 서측(피트니스 센터), 1604동 지하1층 서측(실내체육관), 1604동 지하1층 동측(게스트하우스), 1605동 지하1층 남측(다함께 돌봄센터, 키즈 플레이 클럽), 1605동 지하1층 북동측(작은도서관), 1617동 서측 주민카페 옥상에는 커뮤니티의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실외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단지 내 11개소(1601동 서측 1개소, 1603동 서측 1개소, 1605동 북측 1개소, 1607동 서측 1개소, 1609동 서측 1개소, 1611동 서측 1개소, 1613동 남측 1개소, 1615동 남측 1개소, 1617동 서측 1개소)로 아파트용 9개소, 근린생활시설 전용 2개소(근린생활시설-1 동측 1개소, 근린생활시설-2 지하1층 1개소)가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킥보드주차존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램프(장애인 겸용)의 위치, 형태, 크기, 길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은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는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오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당 사업지 대지경계 밖에 조성된 차도 및 보행로는 당 사업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상도로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 시 인접 주변도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 시에는 도로의 레벨, 폭, 방향 등이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 사업지와 연관은 없습니다.
- 주출입구 전면 LED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주동 세대는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옥외 승강기 3대 (주출입구, 부출입구, 1608동 전면 승강기), 커뮤니티 승강기 4대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내부,1605,1613동 옥상정원 전용승강기)는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 슬라브중 Precast Concrete구간은 별도의 천정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부위는 무기질계 뿜칠 마감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내부 구조벽체를 제외한 비내력벽체는 경량철골벽(Dry wall) 구조로 되어있으며, 못, 앵커등의 고정이 불가하고 피스등을 사용한 고정필요시 스터드파인더를 구매하시어 스터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안내책자에 배포되는 거실의 벽걸이 TV 보강위치외 고정으로 인한 하자 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C-게이트)에는 미디어파사드 및 벽천이 설치되며, 인접 세대에서는 이에 따른 빛 공해 및 소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광고물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계획 예정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할 관청의 계획 등에 따라 입주 시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610동 북측에는 펫스쿨가든(반려동물 특화 정원)이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7동 북측에는 에코가든(세대 체험 학습장), 1608동 북측에는 에프터스쿨가든, 1609동 북측에는 어싱가든, 1612동 북측에는 릴렉스가든이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606동 4호,5호 저층세대는 전면에 옥외계단 이용자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5동 저층세대는 전면 휴게공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웰 루프탑가든 설치로 인접 세대 혹은 하부 세대에서는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웰 루프탑가든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며, 이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

-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견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단차로 인해 각동별 출입구의 진입방법(필로티, 무단차, 경사로, 계단 등)은 상이하며 계약전 모형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지상1층에 설치되고,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 각동별로 1개소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홀,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위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피뢰설비, TV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눈부심, 풍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01, 1604, 1605, 1606, 1613, 1614, 1617동 측벽에 태양광, 경관조명(일부 구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전실구간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단위세대 현관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통기관, 환기설비 등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기능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뿜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측벽 및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집광판으로 인한 빛의 산란(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사생활의 침해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하부세대의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1, 1604, 1614, 1617동 6~10층 전면의 입면 돌출구조물로 인해 하부세대 일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1동 지하1층 진입은 부대시설 홀을 지나서 진입하는 동선으로 계획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하향식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층세대와 펜트하우스 천정고는 인허가 변경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120타입)는 안방에 비확장 발코니가 없고 방의 형태에 굴곡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120타입)의 테라스에는 설비 배관 노출로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세대가 없는 최하층 세대(1층 및 필로티) 하부에는 층간완충재 설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붕 및 측벽에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는 펜트하우스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민 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실내체육관, 주민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 등이며 내·외부 시설물의 내용 및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나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1동 지하 1층에 피트니스/골프라운지/GX룸/사우나/패밀리 아레나/웰컴라운지, 1604동과 1605동 사이 지하 1층에 센트웰 가든 스위트 1605동 지하 1층에 키즈 플레이 클럽/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 1616동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1617동 지하 1층에 용역원휴게실, 1614동과 1617동 사이 지하1층~지상1층에 크리스탈라운지 지상 1층에 아너스라운지/어린이집/티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인접세대(수직, 수평)에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 에 의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클라우드 워크 가든(스카이 데크)과 연계하여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추후 사용 여부는 입주자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클라우드 위크 가든(스카이데크)에서 일부 세대와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 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카페(크리스탈라운지)는 세대, 계층, 지역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있으며, 외부인 이용여부는 추후 입주자 협의에 의해 결정 됩니다. (현상공모시 공공기여 부분)
- 키즈 플레이 클럽은 웰컴 키즈 가든과 연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외부 출입문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613동 북측 근린생활시설 옥상, 1614동 전면 크리스탈라운지 옥상, 1601동 배면 피트니스센터 옥상, 티하우스 서측 에는 옥외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경로당(아너스라운지)은 1615동의 남동측, 어린이집은 1608동의 남측, 게스트하우스(센트웰가든스위트)는 1604동 남서측, 키즈플레이클럽, 작은도서관은 1605동 하부, 관리사무소는 1616동 하부, 용역원휴게실은 1617동 하부]는 실외기실로 각각 구획되어있으며,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위치 및 개소는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레 티하우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며, 나머지 옥외 파고라(조경시설물)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경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식재, 포장, 데크, 석가산,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킥보드주차존, 운동시설, 휴게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비상차로 및 보행로, 소방활동공간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조경,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601,1602, 1603, 1604, 1613, 1614, 1615동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외부구간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는 동에는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 인근으로 소방차량 전용구역이 구획되며, 단지 특화를 위해 일부 구간이 친환경 포장재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01~1617동은 지하 2개층(지하2층 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근린생활시설/부대시설)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통행로 유효 높이는 지하2층 2.3m, 지하1층 3.0m(택배차량 진입가능)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25년 4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받은 현장으로 당시 주차장법 기준에 따라 일반형 2.5X5m 확장형 2.6X5.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기둥,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뿜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렌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에 전기차 급속, 완속 충전설비가 설치되고, 수량과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용요금 및 유지관리 관련 입주자 협의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급속충전기 6대, 완속충전기 54대, 과금형충전콘센트 428대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2채널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는 불꽃감지 CCTV가 설치되며, 주차유도카메라와 혼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과금형 충전 콘센트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지정되며, 일반차량과 전기차량이 같이 주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관제용 차단기의 위치와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는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2개소(서측 차량 진출입구 인근 1개소, 1617동 지하1층 1개소) 설치계획 예정입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은 1613동 북서측 근린생활시설 옥상, 1601동 북서측 옥외, 1617동 남측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601, 1613, 1617동 인근 지상1층에 2개소 위치하며 전면 보행로 레벨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외부 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인해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5대)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공시 주차구획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면의 입면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바닥 슬래브는 주변 대지 레벨을 따라 계단식으로 형성될 예정이며, 시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상세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에 대형차 주차구획 2곳은 상가주차장이 아닌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2의 주차(지하1층) 2대, 부출입구 근린생활시설-1의 주차(지상1층) 3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2의 상가 주차구역과 공동주택 주차구역은 차단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차유도선 바닥표기로 입주자 주차구역과의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기타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로, 지상 주차 및 회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악취,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내에는 기본품목, 확장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후드, 전기오븐, 쿡탑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는 Mock-up 세대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침실,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부 및 단위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중문 및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선택시)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시공부분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기준층 층고는 2.8M,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조대리석류(주방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 및 세라믹타일류(주방상판 등)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 공사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호실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원하시는 가전 제품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워시타워 등)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되거나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하자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품목은 공간을 반드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쿡탑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을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가구의 크기나 마감자재, 레이아웃 및 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견본주택과 달리 주방가구 배치 및 설치수납가구의 크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구가 설치되지 않는 부위는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내부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수납장),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악세서리 및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TV(유상옵션), 악세서리, 빌트인 제품(쿡탑, 후드 등) 등은 평형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시 제품 사양 및 제조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설비는 그릴을 통해 유입되는 우수 및 시스템에어컨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에는 해당 세대의 대피공간 윗층세대의 하향식 피난사다리 투영 바닥부분을 포함하여 피난공간 전체에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문은 철재방화문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 재료, 성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그릴창으로 설치되며,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단위세대 평면 및 해당법령에 따라 소방배관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로 인해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 시공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시스템 가동시 운전소음이 단위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며(1층 세대는 설치하지 않음), 상하층간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A, 101B, 120P 타입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세탁기는 병렬설치가 힘든 구조이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 덮개 개방 반경에 대피공간 출입문과의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선홈통 및 드레인 위치는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 천장 높이는 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대피공간 바닥레벨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구조계산 및 안정성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착색프레임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와 문 및 기타 창호부속자재의 사양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개수, 디자인, 형태, 규격,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난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창호 난간에는 국기봉 꽂이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에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발코니 분합분은 단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중창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주방창은 시스템창호 유상옵션이 설치 되어있으며, 유상옵션 미 선택 시 철재 난간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안방 발코니, 및 84A 알파룸 외부창호에는 철재난간이 설치되며, 주방 창호는 유상옵션 선택 시 철재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외기에 면하는 PL창호 및 실외기 그릴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기계/전기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액세사리류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져,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조명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환기용 디퓨져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재질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및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미시공)단,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제조사별 판매가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 호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욕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윗층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아랫층 세대(비확장형, 확장형)는 본 공사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 주방 악세서리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의 싱크대의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1 건식욕실 공간은 천장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에 따라 일부 타입에 한해 발코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가전 설치품목은 공간을 사전에 실측 확인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2(84A, 84B, 101A), 발코니3(74A, 101C) 창호방향에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 설치시 창호 개폐에 간섭될수 있으며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시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배기가 직배기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 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 시스템은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측정의 방법은 관련법에 준수하여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전세대 거실과, 최저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각 실(주방 창고 등 작은창 제외)에는 방범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1601~1617동 옥상, 1601,1604,1605,1613,1614,1617동 측벽에 설치되며 동별 수량 및 용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유상옵션)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TV와 배관배선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센트레빌 전용앱) 홍보 내 표현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및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어서비스는 바이비와 호환되는 홈IoT 전용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어서비스는 연동링크를 통해 홈IoT 전용 가전기기 제조사의 홈IoT 앱에 연결되어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신사 무관)
- 센트리 C-HOME 내 커뮤니티 예약 서비스는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옵션)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무선AP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음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류 등은 본 공사시 색상, 재질, UI, 크기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의 상부층 단위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은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물 입면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및 C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BI 및 루버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BI 및 동호수는 경관조명으로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외벽에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및 주방 후드 배기구, 욕실 직배기 시스템 환기구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타공시공이 이루어지며 외부로 연도가 설치되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욕실 및 주방배기, 전열교환기 급배기를 위한 환기캡이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및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뿜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 창호 (크기, 모양, 색, 사양 등), 난간 (크기, 모양, 색, 재질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 재질, 사양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등의 위치, 형태, 크기, 자재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저층부 석재, 옥탑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세대로 인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 사인물 · 위성안테나 ·피뢰침, 기간사업자 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 대지 주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거나,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고층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아파트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기 학교 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확장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제시된 내·외부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단종),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월패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문 및 그릴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및 개폐방향은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도로, 옹벽 등)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및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당 견본주택 전시 세대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 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뷰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문 및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문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

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견본주택건립 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추후 제공)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중 또는 실행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동호수가 추첨 배정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시행자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개별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설계범주(C), 동적해석법	Ⅶ-0.204g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2층 2.3m, 지하1층 3.0m(택배차량 진입가능)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유효 높이 : 지하1층 단지 서측, 남측 차량출입구 3.0m(택배차량 진입가능)

1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 여부	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해당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33,973,284,511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127,846,841,00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 설비공사	2,129,354,000
		기간이자	47,170,823,608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2,129,354,000
		필요적경비	17,404,309,271			조적공사	4,501,634,000			가스설비공사	1,521,280,000
		그 밖의 비용	10,699,540,801			미장공사	5,288,860,000			자동제어 설비공사	456,056,000
		계	409,247,958,191			단열공사	7,074,870,000			특수설비공사	11,214,379,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8,679,520,000			방수, 방습공사	2,604,304,000			공조설비공사	2,943,679,000
		흙막이공사				목공사	6,162,776,000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0,951,503,000
		비탈면보호공사				가구공사	9,241,614,000			정보통신공사	10,818,208,000
		옹벽공사				금속공사	2,146,292,000			소방설비공사	15,474,608,000
		석축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12,034,000			승강기공사	6,280,446,000
		우수,오수공사	3,083,298,000			창호공사	15,914,895,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5,007,217,000
		공동구공사				유리공사	1,842,616,000			이 윤	8,547,929,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513,883,000			타일공사	9,333,365,000		계		397,566,341,000
		도로포장공사	770,824,000			돌공사	11,848,431,000	간접비	설계비		4,391,03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56,941,000			도장공사	7,272,819,000		감리비		8,683,252,412
		정화조시설공사				도배공사	6,685,503,000		일반분양시설경비		3,968,077,327
		조경공사	9,840,888,000			수장공사	16,783,948,000		분담금 및 부담비		23,839,998,000
		부대시설공사	513,883,000			주방용구공사	10,925,550,000		보상비		
	건축	공통가설공사	11,720,144,000			그 밖의 건축공사	516,806,000		기타사업성 경비		44,952,757,802
		가시설물공사	3,930,884,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3,042,559,000		계		85,835,115,541
		지정 및 기초공사	2,507,601,000			급탕설비공사	4,562,745,000	그밖의 비용			65,790,085,268
		철공공사				오수, 배수설비공사	4,666,000,000	합계			958,439,5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기간이자	47,170,823,608	건축비 가산항목	공동주택성능등급		11,452,452,387
				법정초과복리시설		4,018,182,350
	제세공과금	17,404,309,271		사업승인조건	법정초과조경	1,946,802,732
					외관특화	4,152,762,270
	말뚝박기	3,851,137,781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정보통신특등급	16,377,823,080
	암석지반	2,354,825,307			에어컨냉매배관	4,896,293,880
					기계환기설비	3,721,892,490
	흙막이 및 차수벽	2,369,937,65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7,941,161,430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6,473,555,207
	지역난방부담금	2,123,640,06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541,616,744
				분양보증수수료		348,128,000
	소계(택지비 가산항목)	75,274,673,680		소계(건축비 가산항목)		2,976,352,736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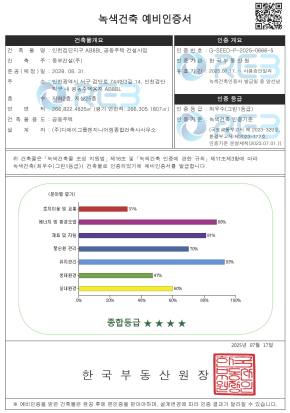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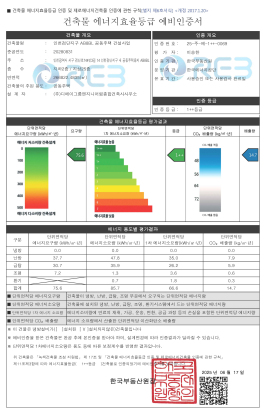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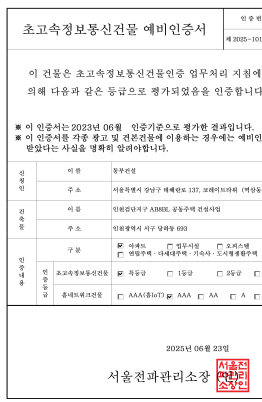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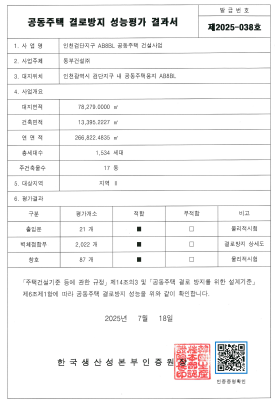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A등급		비 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모뎀	-
	2	예비배관	MDF	-
	3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
	4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스위치	-
	5	가스밸브 제어기	온수분배제어반	-
	6	세대통신 단자함	도어폰	-
	7	공동현관기	스위치박스	-
	8	집선장치	거실동체감지기	-
	9	-	피난사다리센서	-
	10	-	CCTV	-
	11	-	무인택배시스템	-
	12	-	비상벨시스템	-
	13	-	주차관제시스템	-

■ 마이너스 옵션세대인 경우 일부항목이 미설치 될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5-101-0005100	**670,907,6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상세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대원포비스㈜
금 액	5,916,342,300	1,311,481,996	1,455,428,115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공동 사업주체		
상 호	동부건설㈜	㈜대우건설	이수건설㈜	㈜우미에스테이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 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반포동, 이수화학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도곡동, 인스토피아)
법인등록번호	110111-0005002	110111-2137895	176011-0097235	200111-0496989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7-4번지**

■ **사업부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8BL**

■ **홈페이지 : https://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com**

■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 약도**

견본주택

사업부지

■ **분양문의 : 1688-0680 (10:00 ~ 18: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